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3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18. 5. 1.),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18. 9. 28.)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지원조례 일관성 유지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나. 신규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변경 (제2조)

- (추가) 물류보조금, 오·폐수처리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투자기업,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전기업 등, 공공기관
- (변경) 용어정의 명확화 및 이전기업의 범위 확대(타 시도 ⇨ 타 시·군)

다.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 (제5조)

-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10명 이상인 기업

라. 공장운영비 등 지원 신설 (제6조)

- 이전·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마. 통근버스 운영지원 신설 (제7조)

- 원활한 노동력 제공, 관내 거주민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제11조)

사.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 (제15조)

- 기존 : 투자금액 200억원, 고용인원 20명 이상
- 변경 : 투자금액 300억원, 고용인원 30명 이상

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신설 (제17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지원 근거 마련

자.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명확화 (제19조)

- 기존 :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과장 간사
- 변경 : 위원장 부군수, 위원 기업유치업무담당 과장, 담당 간사

차.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26조)

- 보조금 정산(상시고용인원 채용 완료/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근거 명시

카. 명칭변경 (제27조)

- 기존 : 사후관리 / 변경 : 사업이행

타.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기준 추가 (제28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미달
-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파. 역할 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제29조)

- 기존 : 투자유치자문역
- 변경 : 기업유치단

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금 금액 증액 (제30조)

- 기존 : 500만원
- 변경 : 규칙으로 정함 (100만원 ~ 20,0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투자보조금 확정 시 편성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감사실-2176, 2019. 2. 19.)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2176, 2019. 2. 19.)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미반영)(주민복지과-11536, 2019. 2. 20.)

-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구성등)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참여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집단지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물류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오·폐수처리보조금”이란 관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이란 농촌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이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여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내 기존기업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증설”이란 관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19. “투자기업”이란 군 권역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 및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올림픽 특구”라고 한다.)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4. “주력업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5.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이전기업 등”이란 타시·군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27.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장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의 최초가동시점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와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규모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소규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내용과 시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투자유치위원회

제19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전개
3. 투자유치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항 심의
4.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투자유치관련 기관 · 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사람
 5.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보조금의 분담) ①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을 균비로만 부담할 수도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 자문료, 수당,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금과 자문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성과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삭제>
-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④ ~ ⑥ <생략>

⑦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저조지역

3.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4.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내 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 및 성과금)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후단에 따른 이전기업의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도 권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폐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업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②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를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⑤ 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이전·신설·증설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투자를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동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유치 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도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도비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도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협의한 주력업종 2개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기업 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단, 별지 제7호서식을 제외한다)중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시장·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6. 시·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조례 제22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투자기업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제19조(사업이행) ①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보조금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 반영 필요

2.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2018.09.21.)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2018.09.28.)에 따른 예산의 분담 등 세부지원기준 규정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4조(보조금의 분담)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 : 천원)

| 대 상 | 지원방법 | 내용 | 보조금 (군비) | 산출근거 (군비) |
|--------------|------|---|-------------|---|
| 이전기업 관내기업 | 보조금 | 본사이전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신설·증설 투자지원 물류보조금 오·폐수처리보조금 통근버스운영보조금 | 2,930,000 | ·본사이전 5억 ·부지매입 15억 ·신증설 투자지원 5억 ·물류보조 1억 ·오·폐수처리보조 3억 ·통근버스운영보조 0.3억 |
| 민간인, 공무원 | 성과금 | 1건당 평균 15백만원 | 30,000 | 100~300명 미만 고용기업 또는 50~100억 미만 투자기업 : 15백만원 × 2건 |

※ 지방비 부담비율 : 강원도 50%, 평창군 50%

나. 추계 결과 : 2,960,000천원 (보조금 2,930,000천원, 성과금 30,000천원)

- 요건 충족시 유형별 보조금 지원
- 유공자 성과금 1건당 1회 지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자체수입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19년) | 2차년도 (2020년) | 3차년도 (2021년) | 4차년도 (2022년) | 계 |
|-----------------------|-------|-----------------|-----------------|-----------------|-----------------|-----------|
| 세 입 | | | | | | |
| 세 출 | | 30,000 | 1,030,000 | 2,960,000 | 2,960,000 | 6,980,000 |
| 보조금(군비) | | - | 1,000,000 | 2,930,000 | 2,930,000 | 6,860,000 |
| 성과금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20,000 |
| 재원 조달 | | 30,000 | 1,030,000 | 2,960,000 | 2,960,000 | 6,980,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0,000 | 1,030,000 | 2,960,000 | 2,960,000 | 6,980,000 |
| | 지방세 | 30,000 | 1,030,000 | 2,960,000 | 2,960,000 | 6,98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해외자본 | |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 |